

보건복지부 2017년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편람 - 중복개설 금지



● 쟁점별 처리 방향

1) 의료인의 타 의료기관에 대한 지분투자는 가능한가?

➔ 지분투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음

-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1인 1개소 원칙을 규정

* 투자는 직·간접적으로 소유를 전제로 함에 지분투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1의료인 복수 의료기관 개설·운영 금지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큼

- 비의료인의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는 불허(사무장병원 등) 하면서 의료인의 경우 지분 참여 등 투자를 인정한다면 형평성에 반함

2) 병원경영지원회사의 경영지원은 가능한가?

➔ 개설·운영권의 보완 또는 지원은 가능

병원경영지원회사의 의미와 유형

- (의미) 의료행위 외에 병원 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, 즉 구매·인력관리·마케팅·회계 등의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법상의 회사(영리법인)
- (유형) ① 구매대행, 인력관리, 법률·회계 컨설팅 등 비용절감·효율화(경영지원형)
② 시설임대, 경영위탁 등 MSO를 통한 외부자본의 의료기관 투자(자본조달형)

-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전속적인 개설·운영권을 보완·지원하는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 (경영지원형)하는 것은 가능

- 다만,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전속적 의료기관 개설·운영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(자본조달형 등) 사항은 허용될 수 없고,

- 경영지원 명목으로 「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상 가맹본부로서 병원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

* 「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은 표준화되어 동질적인 상품·서비스와 이를 위한 가맹본부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함에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병원 가맹사업은 그 성격상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(공정거래위원회)

3) 병원경영지원회사는 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?

➔ 사례별 의료기관 개설·운영에 관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

-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전속적인 개설·운영권을 보완·지원하는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 (경영지원형)하는 것은 가능

- MSO가 의료기관 개설·운영에 관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별로 판단하되,
- 법적인 형식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·운영한다면 사무장병원에 해당될 수 있음

4)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인 이사(대표이사 포함) 겸임이 가능한가?

➔ 겸임이 불가함

- 이사(대표이사 포함)는 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결정하는 실질적 의사결정자라는 점과,
- “어떠한 명목”으로도 복수의료기관 개설·운영을 금지한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,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경제적·비경제적 대가를 받으면서 이사(대표이사 포함)를 겸임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해석 됨(법제처)

법제처 유권해석 13-0051, 2013. 4.30.

- “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별도로 개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거나,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은 이사인 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·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 위반됨”

5) 복수 의료기관 개설·운영시 처벌사항은?

➔ 대표원장과 지점원장은 공동정범으로 처벌

- 대표원장과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한 지점원장도 형법상 ‘공동정범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처벌규정 적용
 - * (대표원장) 타 개설주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·운영주체 또는 투자지분을 보유 의료인
 - * (지점원장) 형식상 의료기관 개설·운영주체 또는 타 의료인의 지분투자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는 의료인
- 특히, 부당요양급여 징수는 해당 조항(개정)의 시행일(2012. 8. 2) 이후 복수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한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비용을 대표원장과 지점원장에게 징수

의료법 제33조제8항 위반 시 불이익

- 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「의료법」 제87조제1항제2호
- ② 자격정지 3개월 「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(보건복지부령)
- ③ 부당요양급여비용 징수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7조 제1항

약사변호사, 약사법, 의료법 자문, 형사소송, 행정소송, 실무적 대응전략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